

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
지원사업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
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0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의 후속으로
조성된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(G타워)를 중심으로 전자의료
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과 G타워의 조기정착 지원 필요
- 나. 관내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외 기업유치를 위한 유인책이
필요하며, 이를 통한 의료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
하여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(재)구미전자정보
기술원에 출연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
그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대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2) 출연예정액 : 금500,000천원(도비200,000, 시비 300,000)

※ 2차년도 지방비 소요금액

나. 주요 사업

- (1) 사 업 명 :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활성화 지원사업
- (2) 사업기간 : 2019. 6. ~ 2021. 12.(2년7개월)
- (3) 총사업비 : 13.3억원(도비 4.9 시비 8.4)
- (4) 위 치 : 구미시 산호대로 253 (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)
- (5) 사업주체 : 경상북도, 구미시
- (6) 주 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7) 사업내용
 - 기업유치 지원 :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지원
 - 인프라 지원 : 분석장비 및 클린룸 등 시설 사용 지원
 - 사업화 지원 : 인증지원, 마케팅 및 인력양성(인큐베이팅 지원)
- (8)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재원	계	'19년	'20년	'21년
총계	총 계	1,334	450	384	500
	도 비	494	150	144	200
	시 비	840	300	240	300
기업유치 지원	소 계	636	136	230	270
	도 비	-	-	-	-
	시 비	636	136	230	270
인프라 지원	소 계	313	173	60	80
	도 비	139	39	50	50
	시 비	174	134	10	30
사업화 지원	소 계	385	141	94	150
	도 비	355	111	94	150
	시 비	30	30	-	-

(9)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

- '10. 11. : 예비타당성 심사 및 국책사업 확정(B/C1.02)
- '15. 5. : 예정부지 변경(舊 대우전자부지 → 공단운동장 부지)
- '15. 7. : 공단운동장 내 건축예정부지 매입(7.273m²)
- '16. 9. : 건축 실시설계 완료
- '17. 2. :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승인
- '17. 5. : 건축 착공(※ 기공식 6. 7)
- '19. 7. : 건축 준공
- '19. 10. : 입주기업대상 의료산업 분석 등 정보제공
- '19. 11. : 신산업 발굴 및 기획지원(5개사, 5개과제)
- '19. 12. : G타워 입주기업 협의체 구성
- '19. 12. : 기업유치 및 인프라조성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·홍보
- '20. 6. :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·기업은행 유치
- '20. 9. : 입주기업 협의회 개최

※ 현재 21개 社, 45.41% 입주율 달성

- '20. 11. :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(G타워) 준공식 개최
- '21. 6. : 기업유치(40개사, 입주율 85%)를 통한 정상화
- '21. 6. : G타워 기반 의료기기제품 전시회 개최
- '21. 12. : 한국/미국 식약처 인증지원 및 인허가 지원
- '21. 12. : 국내외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도·컨설팅 지원
- '21. 12. : GMP 및 품질관리자 교육, 지역 전문가 양성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전자의료기기산업은 기술개발과 인허가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나 인구 고령화, 웰빙문화 확산 등에 따라 미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.
- (2) 의료기기산업 성장률은 높지만 수도권과 격차가 높고 고부가가치 제품이 부족하며, 인근지역 의료지구 특성화에 다른 기업유치 경쟁구도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없이 기업유치에 난항 예상
- (3) 최근 구미지역의 대기업이전 및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신산업 육성·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기술력을 보유한 핵심기업의 유치를 통한 동반성장이 절실한 상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(3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관리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」

제3조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소관 실 · 과		신산업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김 창 열
	담 당	채 창 수
	담 당 자	이 선 영 (480-6173)